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20조제2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 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생 략) 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u>행정안전부장관</u>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도지사를 거쳐</u> <u>(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u> <u>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7